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0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심상정・류호정・강은미

양경숙 · 배진교 · 장혜영

강민정 • 이은주 • 김정호

박상혁・양정숙・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수 급권자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 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주민을 수급자격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유엔 사회권규약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43"을 "6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본단위로 실시하되,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의 개별가구로 본다.
- ③ 국내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외국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관 광 등 특정의 제한적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 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 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60-----<신 설> ②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학업이 나 취업 등을 이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30세 미만 의 미혼 자녀는 별도의 개별가 구로 본다. ③ 국내 체류기간이 「출입국 <신 설>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외국인은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관광 등 특정의 제

<u> <신 설></u>

한적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